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55
----------	------

제출년월일 : 2014 10.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가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있어서 지역 연대의 중심적 활동이 보호보다는 안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호를 안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토록 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제명 변경

-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용어를 변경

나.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 명칭변경을 반영(안 제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추가)

다. 정의규정에 피해자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라. 아동·여성 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례협의회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11조~제13조)

마. 시정참여확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7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에고결과 : 불임

- 입법예고 기간 : 2014. 8.13 ~ 9. 1(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 (전문)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 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제명, 제5조제1항, 제6조제2호 중 “아동·여성 보호” 를 각각 “아동·여성 안전” 으로 하고, 제6조제4호 중 “아동·여성 보호를” 을 “아동·여성 안전을” 로 한다.

제6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례협의회 회부사안

제7조제3항 중 “아동·여성 보호와” 를 “아동·여성 안전과” 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를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를 “2년으로 하되”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연대 회의는” 을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여성업무담당과장” 을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계장” 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2조(사례협의회의 업무) 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사례협의회 운영) 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역연대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여성가족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하 순 자
	계장·팀장 직위·성명 전 화	여성정책계장 송 순 복 (행정 22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행위</p> <p>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p> <p><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p> <p>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p>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
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생략)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생략)

<신 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6.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략)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② (생략)

제2장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

-----아동·여성안전-----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아동·여성 안전-----

3. (현행과 같음)
4. -----아동·여성 안전을-----

5. (현행과 같음)
6. 사례협의회 회부사안
7.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여성 안전과-----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
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 ~6. (현행과 같음)

④ -----2년으로 하되-----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
회(반기별1회)이상 개최하며,-----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실비보상) (생략)

제3장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②(생략)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생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생략)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간사) ① -----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계장---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2조 (사례협의회의 업무) 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사례협의회 회의 운영) 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역연대의결로 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 (현행과 같음)

제3장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②(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비의 지원)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현행과 같음)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